2023년 평생교육사 자격발급
신청 매뉴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차 례

Ⅰ.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 1
1. 신청 개요 ····· 1
2. 유의 사항 ····· 2
Ⅱ.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접수 ····· 2
1. 신청서류 ····· 2
2. 자격발급을 위한 신청서류 작성 ····· 13
3. 유의 사항 ····· 13
Ⅲ.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자격증 발급 신청 ····· 15
1. (1차) 온라인 신청 ····· 15
2. (2차) 서류 제출 ····· 15
Ⅳ. 자격증 교부 ····· 16
1. 평생교육사 자격증 교부 ····· 16
Ⅴ. 자주 하는 질문 ····· 17

【 부 록 】

[부록 1]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 20
[부록 2] 평생교육 관련과목 ····· 22
[부록 3] 평생교육사 경력산정표 및 평생교육기관 유형 ····· 23
[부록 4] 기본증명서 발급 방법 ····· 28
[부록 5] 외국학위 소지자 학력인정확인서 발급처 ····· 30
[부록 6] 온라인 신청 방법 안내 ····· 별첨

Ⅰ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1 신청 개요

○ **(신청 대상)**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를 접수 받은 **대학 및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하 '양성기관')

○ **(신청 절차)** 양성기관은 신청자의 서류를 제출받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담당부서(평생교육사자격실)에 자격 발급 신청

< 자격증 발급 신청·교부 절차 >

신청자	양성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 신청서류 및 신청자격 확인	→ 자격증 발급 신청	→ 신청접수 및 자격발급사정	→ 자격증 제작 및 교부

※ 자격증 발급 신청은 양성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함.
양성기관이 아닌 국가평생교육진흥원(NILE)으로의 학습자 개인 신청은 불가함.

○ **(신청·접수 시기)** 연 4회의 자격증 교부 실시

- 양성기관은 신청자 접수일정을 정하여 개인 신청자 대상 일정을 공지하여야 함.
- 신청접수 기한 내 제출서류 **도착분**에 한하여 평생교육사 자격 발급 신청·접수함.
- 대학(원) 졸업예정자는 **제1차·제3차 접수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함.

구분	접수 기간		자격증 교부
	신청자⇒양성기관	양성기관⇒NILE	
제1차	양성기관별 상이 (별도 자체공지)	2.6.(월)~2.17.(금)	3.31.(금)
제2차		5.8.(월)~5.12.(금)	6.9.(금)
제3차		7.17.(월)~7.28.(금)	9.8.(금)
제4차		10.30.(월)~11.3.(금)	11.30.(목)

2 유의 사항

○ 학습자가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여러 기관(대학 또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자격증 발급 신청 업무 수행

① 이수한 과목이 가장 많은 기관
② 이수한 과목 수가 동수일 경우, 우선순위
가) 실습과목을 이수한 기관 나) 필수과목을 가장 많이 이수한 기관
다) 필수과목명 순에서 앞선 과목을 이수한 기관
㉮ 평생교육론 ㉯ 평생교육방법론 ㉰ 평생교육경영론 ㉱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자는 학위취득자여야 함.

- 자격증 발급 신청 이후, 졸업사정에 의해 졸업유예 등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자격증 발급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양성기관은 이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공문을 통해 통보하여야 함.

자격증 발급 신청자가 졸업 유예 등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자격실'에 전자문서 또는 팩스로 공문 발송
- 제출기한 : 자격증 교부일로부터 3일 이내

II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접수

< 자격증 발급 신청·교부 절차 >

신청자	양성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	신청서류 및 신청자격 확인 →	자격증 발급 신청 →	신청접수 및 자격발급사정 →	자격증 제작 및 교부
양성기관 접수일정 내 서류 제출 완료	신청서류·자격확인	(1차)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서식 7] 신청자 명단 작성 (2차) 신청서류 발송	· 신청서류 접수 · 자격요건 검토	· 자격증 제작 · 자격증 교부 (양성기관으로 발송)

1 신청서류

○ 양성기관은 개인별 신청서류를 제출받아 서류미비 여부 등을 확인

- 평생교육사 자격발급 신청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이수한 과목은 자격증 발급 신청 전에 반드시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이 완료되어야 함(학점인정이 완료된 과목은 성적증명서 제출 면제).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참고
공통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서식 1]
	● **최종학력 증명서 1부**	졸업예정증명서 인정불가
	● **성적증명서 1부** ※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통하여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상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을 받아야 자격취득 학점으로 인정 가능함	
	● **기본증명서(일반) 1부** ※ 개명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특정-개명·성본변경 제출 (상세유형도 제출 가능)	[붙임 4] 참조
	●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1부** ※ 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는 평생교육 업무 경력확인서 제출	[서식 2] [서식 5]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1부** ※ 양성기관 양식으로 변경하여 활용 가능	[서식 3] 양성기관 보관용
해당자별 추가구비	●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및 강의계획서 각 1부** ※ 대학에서 법령상 평생교육 관련과목과 유사한 과목을 이수한 자	[서식 4] ※ 기인정 유사과목은 제출 불요
	● **경력증명서 1부** ※ 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 ※ 시간강사·단시간 근로자는 총 근무시간 및 주당근무(강의)시간이 확인되어야 함.	[부록 3] 평생교육 경력산정표 참고
	● **외국학위 취득사실 확인 관련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대학 학위취득 확인 관련 서류 1부 - 대학 학력인정 확인 관련 서류 1부 - 영문 이외 외국어 서류는 한국어 번역공증서류 1부 (또는 행정사법에 따른 해당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번역문 및 번역확인증명서 각 1부) ※ 신청기관 담당자가 '외국학위 취득사실 확인 관련 서류' 확인하고 '원본대조필' 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부록 5] 외국학위 소지자 학력인정확인서 발급처 참고
	● **외국인(외국 국적자) 관련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1부 - 국적증명서(여권사본 등) 1부	

- 신청자의 **평생교육사 자격발급 신청·접수 시, 구비서류 누락**이 없는지 **체크리스트 활용**하여 확인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서류 체크리스트

(각 1부)

신청서류			참고사항	참고서식
공통 서류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 [부록1] 평생교육사 자격요건 참고하여 작성	[서식 1]
	· 최종학력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는 인정불가	
	· 성적증명서 (자격 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목)		·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통하여 과목을 이수한 경우 자격증 발급 신청 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을 통해 반드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이 완료되어야 함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개명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본증명서(특정-개명·성본변경)로 제출	
	·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 원본으로 제출	[서식 2]
			· 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는 평생교육 업무 경력확인서 제출	[서식 5]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동의서		· 자격증 교부 전까지 양성기관 보관용	[서식 3]
해당자별 추가서류	유사과목 이수자	· 유사과목확인서 및 강의계획서	· 대학에서 법령상 교과목과 유사한 명칭의 교과목을 이수한 자에 한함. · 기인정 유사과목은 제출 불요	[서식 4]
	구법 대상자 (평생교육 관련 경력 소지자)	· (평생교육 관련 업무) 경력증명서	· 구법 대상자로 평생교육 관련 3개월 이상 경력소지자에 한하여 제출 · 시간강사·단시간 근로자는 총 근무시간 및 주당 근무시간 확인 필요 · 경력산정은 평생교육 경력산정표 참고	[부록 3]
	외국학위 취득자	· 외국학위 취득사실 확인 관련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 대학 학위취득 확인 관련서류 · 대학 학력인정 확인 관련서류 · 영문 이외 외국어 서류는 한국어 번역 공증서류 1부 (또는 행정사법에 따른 해당 외국어번역 행정사의 번역문 및 번역확인증명서 각 1부)	[부록 5] 참고
	외국인	· 외국인(외국 국적자) 관련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국적증명서(여권 사본 등)	

[한 번 더 확인]
자격증 신청을 위한 서류가 누락 될 경우, 해당 차시에 자격증 발급이 불가하므로 서류 구비 여부와 참고사항을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7. 12. 29.>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한글)	한글명 기입 (ex. 이평생)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기입 (ex. 900101-1234567)	전화번호 본인 연락처 기입 (ex. 010-0000-0000)
	주소 (ex.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4)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수령하실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최종학력	학교명 최종 졸업한 대학교명 기입 (제출서류와 동일)	전공 전공학과 기입(ex. 평생교육학과)
		기간 최종 졸업한 대학교 입학일자와 졸업일자 기입 (ex. 입학 2015.03.01. ~ 졸업 2019.02.25.)	학위등록번호 취득한 학위번호 기재 (ex. 00 대학교 2002(학)0000)
	이수기관	기관명 평생교육사 관련 교과목 이수기관 기입 (ex. 00대학교 평생교육원)	이수기간 평생교육사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기간 (개강일~종강일) (ex.2000.03.01.~2002.6.31)

신청 내용	자격등급	평생교육사 급 자격요건에 맞는 등급 기입 (ex. 2급)
	자격요건	평생교육사 급 제 호 자격요건에 맞는 등급 및 호수 기입 (ex. 2급 제 2 호)
	이수과목 및 경력	뒤쪽과 같음

「평생교육법」 제2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날짜 반드시 기입)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명 기입 후 자필서명 혹은 도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최종학력 증명서 1부 2. 이수기관 성적증명서(별표 1의 평생교육사 관련 과목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를 말합니다) 1부 3. 경력증명서(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1부 4. 별지 제2호서식의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1부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 6. 그 밖에 평생교육사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확인	→	자격증 작성	→	발급대장 기재	→	교부(우편 교부 등)
신청인		신청인(이수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이수과목 및 경력

이수기관명	평생교육사 자격증 관련 교과목 이수기관명 기입(복수 기재 가능)

이수과목

구분	과목	이수기관명	학점	성적
필수과목	평생교육개론	000 대학교	3	95
	평생교육경영학	000 대학교	3	85
	평생교육방법론	000 대학교	3	90
	평생교육실습	000 대학교	3	91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000 대학교	3	100
	소 계		15	
선택과목	여성교육개론	000 대학교	3	100
	성인학습및상담	000 대학교 평생교육원	3	88
	교수설계	000 대학교	3	85
	인적자원개발론	000 대학교 평생교육원	3	98
	직업·진로설계	000 대학교 평생교육원	3	97
	소계		15	
합계			30	92.9

경력 **(구)평생교육법 적용 대상자로 평생교육실습 면제자만 평생교육 관련 업무경력 기입**

기관명	부서명	근무기간	근무월수	비고
xxx 평생교육원	~팀	2021.1.1.~2022.1.1	12개월	
		~		
		~		
		~		
		~		

서식 2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개정 평생교육법 적용자) 필수과목으로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평생교육 시설 또는 평생교육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실습지도자의 지도하에 4주, 160시간 이상 실시
((구)평생교육법 적용자) 평생교육실습 별도 과목 이수 없이 개별적으로 평생교육 시설 또는 평생교육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실습지도자의 지도하에 3주, 120시간 이상 실시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1. 실습기관명 : 00 평생학습센터
2. 실습기간 : 2022년 7월 9일 ~ 2022년 8월 3일(4주, 총 160시간)
3. 실습지도자 :

직명	성명	담당	내용	비고
평생학습과 000 주무관	0 0 0	평생학습과 평생교육 업무 담당	평생학습축제 및 평생학습교실 운영	평생교육사 2급, 평생교육 관련 경력 (4년)

4. 실습내용 :

제 1 주	제 2 주	제 3 주	제 4 주
- 기관 및 실습내용 오리엔테이션 실시 - 공문서 작성 실습 - 00 프로그램 모의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			

5. 실습상황

실습생 성명	학과명	근무태도 (10%)	자질 (15%)	학습지도 능력 (50%)	연구조사 활동 (15%)	학급경영 및 사무처 리능력 (10%)	총평 (100%)	비고
000	평생교육 학과	10	13	45	14	9	91	

위 사실을 증명함

2022년 8월 5일

00 평생학습센터장 0 0 0 직인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양성기관 보관용)**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동의서

해밀원격평생교육원에서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역]

수집·이용하는 대상	수집 항목	목적	보유기간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서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최종학력(학교명, 전공, 입학 및 졸업시기, 학위등록번호), 이수기관(기관명, 과목명, 이수기간, 학점, 성적)	본인실명확인 자격증 신청 및 교부 자격취득 요건 확인, 자격증 진위 확인	자격증 교부 시까지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최종학력(학교명, 전공, 입학 및 졸업시기, 학위등록번호), 이수기관(기관명, 과목명, 이수기간, 학점, 성적)	본인실명확인 자격증 신청 및 교부 자격취득 요건 확인, 자격증 진위 확인	준영구 보존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 받는 자	제공 항목	제공 목적	보유기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육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전화번호, 이메일, 최종학력(학교명, 전공, 입학 및 졸업시기, 학위등록번호), 이수기관(기관명, 과목명, 이수기간, 학점, 성적),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내역 조회	**본인실명확인, 자격증 신청 및 검정, 자격증 교부, 자격증 진위 확인**	준영구 보존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기타 고지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수집근거
주민등록번호	**본인실명확인, 자격검정, 자격증 교부, 자격증 진위 확인**	준영구 보존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해밀원격평생교육원

※ 해당 서류는 양식의 변경 및 활용이 가능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제출이 아닌 양성기관 내 보관**하도록 함

서식 4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학습자가 이수한 교과목 명칭이 법령상 평생교육 관련과목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및 '강의계획서'를 구비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 시 함께 제출**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인정 심의**를 통해 인정 여부 최종 확정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 학교명 : 00 대학교

○ 과목 운영 학과(학부)명 : 평생교육학과

○ 유사교과목 확인내역

구분	법정 교과목명	인정 유사교과목명	과목 개설일	유사교과목 인정 사유
필수과목	(예시) 평생교육개론	(예시) 평생교육의 이해	2001년 2학기	교육과정 동일
선택과목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본 교에서 개설한 교과목이 상기와 같이 법정 교과목과 유사한 교과목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0000 년 00월 00일

0000대 학교 총장

(또는 학과(부서)장)

※ [별첨] 과목별 강의계획서 각 1부.

서식 5 **평생교육 업무경력 확인서**

(구) 평생교육법 적용 대상자 중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에서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3개월 이상** 전담한 경력이 있는 자는 **현장실습 면제**가 가능함

※ (필수 서류) 평생교육 업무경력 확인서 1부, 경력(재직)증명서 1부, 평생교육시설신고(등)증 1부

평 생 교 육 업 무 경 력 확 인 서

1. 인적사항

성 명	0 0 0	생년월일	1980. 12. 06

2. 기관사항 (붙임. 평생교육기관 유형 참조)

기 관 명	000 평생학습관	기관유형	1군 ■ 2군 □

3. 경력사항 (붙임. 평생교육 경력산정표 참조)

소속부서명	(ex. 평생학습과)	근무기간	(ex. 2022.01.01.~2022.12.31.)
고용형태	(ex. 통상근로자)	주당 근무시간	(ex. 주당 40시간)
담당업무	※ 대표적인 평생교육 관련 담당업무 1개 이상 기술		

위 기간 동안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000 평생학습센터장 000 직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서식 6 **평생교육 관련과목 등급별 점수 확인서**

평생교육 관련과목 등급별 점수 확인서

각 대학(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점수 산정 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곳에 ☑ 하시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성적증명서에 과목별 백분율 환산점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작성(제출)하지 않습니다.

성 명 :

학교명 :

☐ 백분율 환산 점수 사용

성적	평점	환산점수	성적	평점	환산점수	성적	평점	환산점수	성적	평점	환산점수
	4.5			3.3			2.1			0.9	
	4.4			3.2			2.0			0.8	
	4.3			3.1			1.9			0.7	
	4.2			3.0			1.8			0.6	
	4.1			2.9			1.7			0.5	
	4.0			2.8			1.6			0.4	
	3.9			2.7			1.5			0.3	
	3.8			2.6			1.4			0.2	
	3.7			2.5			1.3			0.1	
	3.6			2.4			1.2			0.0	
	3.5			2.3			1.1				
	3.4			2.2			1.0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적 산출시 부여한 원점수 사용

위 대상자가 본교(기관)에서 이수한 과목과 취득 성적(점수)이 상기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학교 학과(부서)장 (인)

○ [예시] 점수 환산 기준표(만점 4.5인 경우)

성적	평점	환산점수	성적	평점	환산점수	성적	평점	환산점수	성적	평점	환산점수
A+	4.5	99	B+	3.3	87	C0	2.1	75	D0	0.9	63
A+	4.4	98	B+	3.2	86	C0	2.0	74	D-	0.8	62
A+	4.3	97	B0	3.1	85	C0	1.9	73	D-	0.7	61
A0	4.2	96	B0	3.0	84	C-	1.8	72	D-	0.6	60
A0	4.1	95	B0	2.9	83	C-	1.7	71	D-	0.5	59
A0	4.0	94	B-	2.8	82	C-	1.6	70	D-	0.4	58
A0	3.9	93	B-	2.7	81	C-	1.5	69	D-	0.3	57
A-	3.8	92	B-	2.6	80	D+	1.4	68	D-	0.2	56
A-	3.7	91	B-	2.5	79	D+	1.3	67	D-	0.1	55
A-	3.6	90	C+	2.4	78	D+	1.2	66	F	0.0	54
A-	3.5	89	C+	2.3	77	D0	1.1	65			
B+	3.4	88	C+	2.2	76	D0	1.0	64			

○ [예시] 점수 환산 기준표(만점 4.3인 경우)

성적	평점	환산점수	성적	평점	환산점수	성적	평점	환산점수	성적	평점	환산점수
A+	4.3	99	B+	3.2	88	C+	2.1	77	D0	1.0	66
A+	4.2	98	B+	3.1	87	C0	2.0	76	D0	0.9	65
A+	4.1	97	B0	3.0	86	C0	1.9	75	D0	0.8	64
A0	4.0	96	B0	2.9	85	C0	1.8	74	D-	0.7	63
A0	3.9	95	B0	2.8	84	C-	1.7	73	D-	0.6	62
A0	3.8	94	B-	2.7	83	C-	1.6	72	D-	0.5	61
A-	3.7	93	B-	2.6	82	C-	1.5	71	D-	0.4	60
A-	3.6	92	B-	2.5	81	C-	1.4	70	D-	0.3	59
A-	3.5	91	B-	2.4	80	D+	1.3	69	D-	0.2	58
A-	3.4	90	C+	2.3	79	D+	1.2	68	D-	0.1	57
B+	3.3	89	C+	2.2	78	D+	1.1	67	F	0.0	56

2 자격발급을 위한 신청서류 작성

○ 양성기관은 **개인별 신청 자격**을 확인 후, [서식 7]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자 명단(이하 '신청자 명단') 작성

※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lledu.nile.or.kr/)] - [기관계정 로그인] - [자격증 신규발급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명단'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 평생교육사 자격 발급 신청 서류의 간소화를 위해 다음의 사항은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사실 확인**」을 통해 자격발급 검정 실시

[참고]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 간소화 안내

• 다음 대상자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의 「**사실확인**」을 통해 **최종학력 증명서** 제출 생략가능

구분	대상자	면제(미제출) 서류	진위여부 확인기관
대학	졸업(학위취득) 대학과 자격증 신청 대학이 동일한 자	**해당 대학 졸업증명서**	자격증 신청 대학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학점은행제 학위증명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등록 완료자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	

※ 양성기관은 반드시 [서식 7] 신청자 명단 내 대상자의 최종학력 증명서를 **'사실확인'**으로 기재해야 함.

○ **학점은행제**를 통해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한 대상자의 경우, **자격 검정**을 위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사실관계(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학위취득 여부 등)**를 **확인할 수 있음.**

3 유의 사항

○ 신청서류 제출 후 **별도의 서류 보완이 불가**하므로 서류 미비, 누락 등으로 **자격 요건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차시 내 **평생교육사 자격 발급**이 불가함.

○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이수한 관련 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이** 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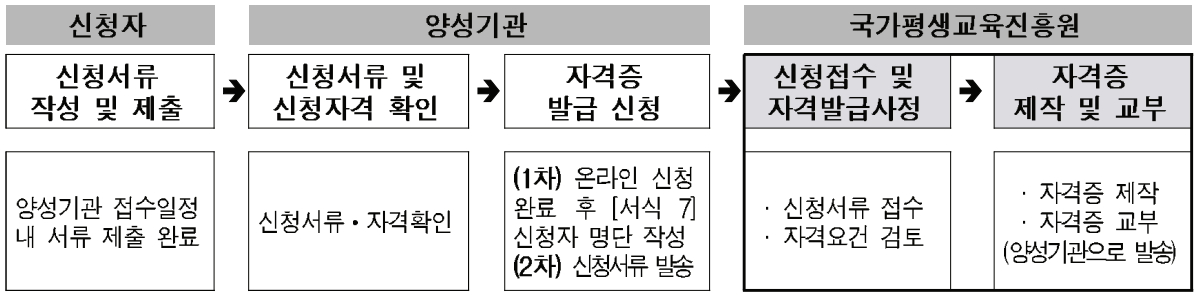
※ 학점은행제 관련 문의 : 학점은행제 콜센터(☎1600-0400)

○ 양성기관은 신청자의 **평생교육사 자격 요건 충족여부,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를 **수령·확인**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는 자격증 발급 전까지 양성기관에서 보관함.

Ⅳ 자격증 교부

< 자격증 발급 신청·교부 절차 >



1 평생교육사 자격증 교부

○ 평생교육사 자격요건 검토과정을 거쳐, 양성기관으로 자격증 일괄 교부

- 평생교육사 자격검정 결과는 **자격관리 홈페이지(lledu.nile.or.kr)**를 통해 **자격증 교부일 각 양성기관으로 안내**

○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매 차시별 자격증 발급일에 자격증 번호가 부여된 후 우편을 통해 양성기관으로 일괄 배송

※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격증이 오배송(분실 등) 되지 않도록 자격발급 신청 공문상의 양성기관 주소 및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사전 확인 요망

Ⅴ 자주하는 질문

1 평생교육사 자격발급 신청

Q1 :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학습자 **개인신청**이 가능한가요?

A1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은 **기관단위로만 신청 가능**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NILE)으로의 개인신청은 불가합니다. 개인은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이수한 양성기관(대학 및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으로 자격증 신청 서류를 우편 등을 통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Q2 :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여러 기관에서 이수한 경우** 자격증 신청은 어디로 해야 되나요?

A2 : 여러 기관에서 과목을 이수한 경우, **개인 신청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한 양성기관으로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양성기관 우선순위**
> ① 이수한 과목이 가장 많은 기관
> ② 이수한 과목 수가 동수일 경우, 우선순위
> 가) 실습과목을 이수한 기관
> 나) 필수과목을 가장 많이 이수한 기관
> 다) 필수과목명 순에서 앞선 과목을 이수한 기관
> ㉮ 평생교육론 ㉯ 평생교육방법론 ㉰ 평생교육경영론 ㉱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Q3 : 자격증 발급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A3 :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기간은 연 4회이며,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lledu.nile.or.kr)에 공고됩니다. 신청자가 **양성기관으로 자격증 신청하는 기간은 양성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각 양성기관별 자체 공지를 통해 접수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서류를 사전 제출**하도록 합니다.

Q4 : 대학(원) 졸업예정자 또는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예정자**도 자격증 신청이 가능한가요?

A4 : 대학(원) 졸업예정자 또는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예정자는 제1차, 제3차 접수기간에 자격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자격증 교부일 이전까지 학위 취득되어야 하며, 학위 취득 시기가 아닌 제2차, 제4차 접수기간에는 예정자의 자격증 신청이 불가합니다.

Q5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평가인정 학습과목(또는 시간제등록 운영 교과목)의 **학점인정 신청과 동시에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도 가능한가요?

A5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평가인정 학습과목(또는 시간제등록 운영 교과목)을 통해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한 경우 학점인정 신청을 완료하였다면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미비 등의 사유로 학점인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자격취득이 불가**합니다.

Q6 : 대학에서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과목도 **학점은행제 상 학점등록**을 해야 하나요?

A6 :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과목도 반드시 학점은행제 상 학점등록**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명의 성적증명서를 구비하여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2 [양성기관] 평생교육사 자격발급 접수

Q1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평가인정 학습과목(또는 시간제등록 운영 교과목)의 학점인정 신청은 기간 내 완료하였으나, **학점인정 처리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학점에 대한 성적증명서 제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 학점인정처리가 진행 중인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명의 성적증명서 제출은 생략 가능**하며, 본원에서 최종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 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최종 학점인정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자격증 발급이 불가함

Q2 : **기본증명서 유형**은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A2 : 자격증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로 모든 유형의 기본증명서 제출 가능하나 **'일반'**유형 제출하도록 권장합니다. 단, **개명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본증명서(특정-개명·성본변경)**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의 기본적인 사항을 증명하고자 발급받는 문서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통해 무료 발급 가능함

Q3 : 대학에서 발급받은 성적증명서에 **백분위 환산 점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등급의 백분위 점수 환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 대학에서 발급받은 성적증명서 하단에 등급별 백분위 점수구간(기준)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각 등급별 기준의 **가장 낮은 백분위 점수를 적용**하게 됩니다.

※ (예시) A+ : 95~100점인 경우 95점, A0 : 90~94점인 경우 90점으로 적용

Q4 : 대학에서 발급받은 성적증명서에 등급별 점수구간(기준)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등급의 백분위 점수 환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 대학에서 **등급별 점수 확인서 또는 등급별 점수구간(기준)에 대한 학칙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합니다. **[서식 6 참조]**

3 평생교육사 자격증 교부

Q1 : 개인 신청자의 **자격검정결과**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1 : 평생교육사 자격검정결과는 매 차시별 자격증 교부일에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lledu.nile.or.kr)의 자격증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Q2 : 평생교육사 자격증 **교부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2 : 매 차시별 자격증 발급일에 발급된 자격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양성기관으로 우편발송을 통해 교부됩니다. 학습자 개별 수령 방법은 자격증 발급신청을 진행한 양성기관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1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가. 개정법 적용 대상자의 등급별 자격요건(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제2항 관련)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3, 시행 2021.12.9]

등 급	자 격 기 준
평생교육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이하 "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2급	1.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이하 "관련과목"이라 한다)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지정양성기관"이라 한다) 다. 학점은행기관 4.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3급	1.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나. 지정양성기관 다. 학점은행기관 3.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4.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으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나. 구법 적용 대상자의 등급별 자격요건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관련, 시행 2000.3.13]

등 급	자 격 기 준
1급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평생교육사 2급자격증을 소지하고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210시간 이상 이수한 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장 및 교감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210시간 이상 이수한 자 4.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설치·경영자중 학력인정시설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210시간 이상 이수한 자 5.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이었거나 공무원인 자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21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급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 중 필수과목(대학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과목의 수만큼 선택과목으로 대신할 수 있다)에 관한 학점을 14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20학점 이상 취득하고 졸업한 자 3.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대학(대학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지정양성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2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300시간 이상 학습을 받은 자 4.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이하 "전문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30학점 이상 취득하고 졸업한 자 5.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전문대학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과목에 관한 학점을 3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450시간 이상 학습을 받은 자 6.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10학점이상 취득하거나 150시간 이상 학습을 받은 자 7.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중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6호의 학교교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학교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14학점이상 취득하거나 210시간 이상 학습을 받은 자
3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20학점 이상 취득하고 졸업한 자 2.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전문대학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2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300시간 이상 학습을 받은 자 3.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전문대학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2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300시간 이상 학습을 받은 자 4. 공무원으로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전문대학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14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210시간 이상 학습을 받은 자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부록 2 평생교육 관련과목

가. 평생교육 관련과목(개정법)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1], 2008.2.18 전부개정]

구분	과목명	
필수(5)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간)	
선택(21)	실천영역(8)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방법영역(13)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나. 평생교육 관련과목(구법)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1], 2000.3.31 제정]

구분	종 류	
가. 필수 과목	과목 I	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경영학, 성인학습 및 상담론, 원격교육활용론, 인간자원개발론, 평생교육방법론 또는 산업교육방법론 중 1과목,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또는 산업교육프로그램개발 중 1과목
	과목 II	사회교육개론, 사회교육방법론, 사회교육학, 사회교육자료개발론, 사회교육행정론, 사회교육과 특수교육학, 사회교육법규론, 성인·청소년지도, 사회교육통계학, 평생교육론, 사회교육기관 및 시설, 사회교육과 여가, 사회교육과정 및 평가, 사회교육과 커뮤니케이션, 사회교육과 사회문제론, 사회학개론, 사회심리학, 사회사업론, 산업심리학, 사회복지론, 청년심리학, 사회조사방법, 성인심리학, 산업사회학, 노인심리학, 농촌사회학, 교육심리학, 도시사회학, 상담심리학, 사회정책, 아동심리학, 지역사회개발론, 교육사회학, 도서관학, 박물관학, 여성학, 노인학, 산업교육론, 직업윤리, 인력개발론, 산업교육과정론, 직업기술교육, 조직이론, 직업교육방법, 레크리에이션지도, 직업교육과정 및 평가
나. 선택과목		청소년교육개론, 여성교육개론, 노인교육개론, 경영학개론, 산업복지론, 기업교육론, 직업과 윤리, 지역사회교육론, 장애인교육개론, 환경교육론

[참고]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부칙 (제정, 2000.3.31)

제2조(유효기간) ① **별표 1 가목(과목 I 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2년 2월 말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② 2002년 2월 말일 현재 별표 1 가목 중 과목 II에 해당하는 필수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이 규칙에 의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으로 본다.

부록 3 평생교육 경력산정표 및 평생교육기관 유형

□ 평생교육 경력산정표

근무유형		경력산정식	
		<1군> 적용 시	<2군> 적용 시
통상근로자 / 전임 교강사 (1주 40시간 근로자)		총 경력기간 × 100%	총 경력기간 × 80%
단시간근로자 / 시간강사 (1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총 경력기간 × $\frac{\text{주당근무(강의)시간}}{\text{40시간(통상근로시간)}}$ × 100%	총 경력기간 × $\frac{\text{주당근무(강의)시간}}{\text{40시간(통상근로시간)}}$ × 80%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교수자 (대학/학점은행기관)	평생교육 관련 전공 전임교수	총 경력기간 × 100%	-
	타 전공 전임교수 / 시간강사	총 경력기간 × 주당 강의시간* × 10% *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관련과목 강의시간에 한함	

○ 1군 :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지정·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및 평생교육 관련 사업 수행 기관
○ 2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경력산정 시 유의사항]

1. **경력 관련 증빙서류**(경력(재직)증명서, 평생교육업무경력확인서, 평생교육기관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력에 한하여** 인정함.
2. **경력산정시점**은 평생교육사 **승급과정 신청접수 마감일자**를 원칙으로 함.
3. **동일 기간 내 중복된 경력**(외부강의 등)은 유리한 경력을 택 1하고 **중복하여 산정**하지 않음.
 단, '**시간강사**'의 경우 **동일 기간 내 여러 기관에서 강의한 경력은 합산**하여 인정함.
4. 「평생교육법」에 따라 '지정·인가·등록·신고'된 기관에서 종사한 경우, **해당 기관이 '지정·인가·등록·신고'된 기간은 1군**으로, **그 이외 기간은 2군**으로 적용하여 산정함.
5. **대학 강의경력** 산정 시 **정규학기는 3.5개월**로 일괄 적용하여 산정함.

□ 경력산정 예시

사례	직군	근무유형	경력기간(예시)		경력산정	인정경력
1	1군	통상근로자	○주당 근로시간 : 40시간 ○총 경력기간 : 36개월		36개월 × 100% = 36개월	36개월
2	2군	통상근로자	○주당 근로시간 : 40시간 ○총 경력기간 : 24개월		24개월 × 80% = 19.2개월	19.2개월
3	1군	단시간근로자	○주당 근로시간 : 35시간 ○총 경력기간 : 12개월		12개월 × 35/40 × 100% = 10.5개월	10.5개월
4	1군	시간강사	A기관	○주당 강의시간 : 10시간 ○총 경력기간 : 4개월	4개월 × 10/40 × 100% = 1개월	1.3개월
			B기관	○주당 강의시간 : 4시간 ○총 경력기간 : 3개월	3개월 × 4/40 × 100% = 0.3개월	
5	1군	대학 시간강사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관련과목 강의)	1학기	○주당 강의시간 : 3시간	3.5개월 × 3 × 10% = 1.05개월	3.15개월
			2학기	○주당 강의시간 : 6시간	3.5개월 × 6 × 10% = 2.1개월	

□ 1군 평생교육기관 유형

구분	기관 유형	설립 근거	기관 소개		예 시	평생교육기관 확인방법	비 고
제 1 유형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법 제19조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	-	-
	시·도평생교육 진흥원	평생교육법 제20조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과 평생교육 상담,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 수행		17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	-
	시·군·구 평생학습관	평생교육법 제21조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기관		평생학습관, 공공도서관, 문화원, 문화회관, 학생회관, 대학, 초·중·고등학교, 연수원·수련원, 지역사회교육협의회, 박물관, 사회복지관, 연구원 등	지정여부 확인	시·도교육청 지정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법 제21조의3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기관		행복학습센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제 2 유형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기관		-	설치·지정여부 확인	시·군·구 및 시·도교육청 설치·지정
제 3 유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기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음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설치 · 지정 기관 ('11년 지정 시작)	-	시·도교육청 지정
제 4 유형	평생학습도시	평생교육법 제15조	·지역내 평생학습 주체간 인적,물적 자원 연계를 통해 '지역을 하나의 학습공동체로 구축'하는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가에서 지정된 학습도시		시·군·구 평생교육 전담부서 또는 평생학습센터 등	지정여부 확인	-
	국가 및 지자체 평생학습추진기구	평생교육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함.		광역시도청/시·군구청/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 내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교육 업무담당 부서 등	-	-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법 제12조	·시·도 내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둔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평생교육협의회		시·도평생교육협의회	설치여부 확인	각 시·도에 등록
		평생교육법 제14조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군 및 자치구에 둔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설치여부 확인	각 시·군·구 설치
제 5 유형	학교의 평생교육 (평생교육 관련사업 수행학교)	평생교육법 제29조	방과후학교 사업 수행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방과후학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방과후학교 사업 수행 학교	-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적합한 교육과정과 체계적 학사관리를 제공할 수 있게 지원·선정된 대학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지정 대학 (사업운영 지정기간에 한함)	지정여부 확인	교육부 지정

구분	기관유형	설립 근거	기관소개		예시	평생교육기관 확인방법	비고
제 6 유형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0조	초·중등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 시범학교)	•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주된 교육대상으로, 초·중등학교에 평생교육원 설치·운영이 가능하며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에서 평생교육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함.	평생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지정여부 확인	시·도교육청 지정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산업교육원, 사회교육원 등	보고사항 확인	교육부에 보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1조	학력 인정	• 정규 학교교육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등록여부 확인	지역교육청 지정
			학력 미인정	• 일정기준 이하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로 교육감에 등록가능	-		지역교육청 등록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2조	• 학교법인 설립 없이 일정기간 사내교육을 이수하면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차원의 기관		삼성중공업공과대학, 삼성전자공과대학교, SPC식품과학대학, 대우조선해양공과대학, 현대중공업사내대학, LH 토지주택대학교, KDB 금융대학교 등의 사내대학	인가여부 확인	교육부 인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3조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1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30시간 이상의 원격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기관	사이버학원 및 사이버 교육원 등	신고여부 확인	지역교육청 신고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원격교육으로 전문대·대학졸업과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기관으로 교육부장관의 인가 필요	영남사이버대학교, 세계사이버대학교 등	인가여부 확인	교육부 인가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4조	• 사업장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문화센터, 병원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	신고여부 확인	지역교육청 신고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6조	• 시민사회단체가 소속 회원 외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시민,운동)연합, YMCA, 운동본부 등	신고여부 확인	지역교육청 신고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7조	• 일간신문·통신·주산신문 또는 월간잡지인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기관과 방송을 행하는 법인의 부설 평생교육기관		신문사·방송사 문화센터(아카데미) 등	신고여부 확인	지역교육청 신고
	지식·인력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8조	•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인력개발사업 기관		기업체연수원(인력개발원, 인재개발원, 교육원 등), 산업교육기관, 주부교실 등	신고여부 확인	지역교육청 신고

□ 2군 평생교육기관 유형

구분	기 관 유 형	설 립 근 거	기 관 소 개	평생교육기관 확인방법	비 고
제 7유형	평생직업교육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기관의 설립·운영등록증 등으로 기관소재 지역교육청에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 여부 확인	지역교육청 등록 / 학교교과교습 학원제외
제 8유형 (기관형)	주민자치기관	지방자치법령	• 주민 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설치된 시설로서,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등에 관한 사무를 포함함. • 시·군·구민회관, 주민센터 등	해당 법령에 근거한 기관 설치 확인 및 운영조례 등을 통해 평생교육관련 사업 수행 여부를 확인	-
	문화시설기관	도서관법	•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		시·군·구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 국립박물관(미술관), 공립박물관(미술관), 사립박물관(미술관), 대학박물관(미술관)이 해당됨.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국립과학관, 공립과학관, 사립과학관 등 과학기술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		-
		지방문화원 진흥법	• 지방문화원 등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수행내용 중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을 포함함.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 문화의 집 등 지역문화복지시설 중 하나로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활동시설,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 중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아동 관련 시설	아동복지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 설치가 가능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정보)센터 등		시·군·구에 신고
	여성 관련 시설	양성평등기본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여성을 교육하기 위한 여성관련 시설 •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발전센터, 여성(복지, 문화)회관 등		시·군·구 설치 또는 시·도 지정
	청소년 관련 시설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육성전담기구,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등		-
	노인 관련 시설	노인복지법	• 노인교실 등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복지(회)관		시·군·구에 신고
	장애인 관련 시설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국가 및 지자체 설치 또는 시·군·구에 신고
	다문화가족 관련 시설	다문화가족지원법	• 여성가족부장관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정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문 인력을 두어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가 또는 시·도 및 시·군·구 설치·지정
	사회복지 관련 시설	사회복지사업법	•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구분	기 관 유 형	설 립 근 거	기 관 소 개	평생교육기관 확인방법	비 고
제 9유형 (훈련 및 연수형)	직업훈련기관	근로자직업 능력개발법	·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근거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여부를 확인	고용노동부장관 협의·승인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훈련원·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 여부를 확인	고용노동부 장관 지정
	연수기관	공무원교육 훈련법	· 공무원연수기관(중앙공무원교육원, 감사교육원, 자치인력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중앙소방학교, 건설교통인재개발원, 통계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대학, 법무연수원,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교육인적자원연수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철도인력개발원, 농업연수원, 전자정부지원센터 정보화교육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부, 국립중앙도서관 사서능력발전과, 병무청 교육담당관실, 국립산림과학원 임업연수부, 국립수산과학원 연수부, 국립환경연구원 환경연수부, 기상청 기상교육과, 한국농업전문학교 기술연수과, 국회사무처 연수국, 비상기획위원회 비상관리국 등)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해 설립된 공무원연수기관 여부를 확인	-
		각 법령	· 평생교육법이 아닌 타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업체, 금융투자업 등의 일반 연수기관(인력개발원, 인재개발원, 교육원 등)	평생교육법이 아닌 다른 법령상의 근거로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후 평생교육관련 사업 수행 여부 확인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신고 되지 않은 기관
제 10유형 (시민사회 단체형)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 위주의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 평생교육실천협의회, 전국문해·성인기초교육협의회, 한국평생교육학회 등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을 통해 평생교육관련 사업 수행 여부를 확인	각 시·도에 등록
	비영리 사(재)단법인	사(재)단법인	·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재)단법인 ·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한국문해교육협회 등	법인설립허가서 및 정관 등의 내용을 통해 평생교육관련 사업 수행 여부를 확인	-
	청소년 관련 단체	청소년기본법/ 사(재)단법인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 · 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단체협의회 등		-
	여성 관련 단체	여성발전기본법/ 사(재)단법인	·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 여성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
	노인 관련 단체	노인복지법/ 사(재)단법인	·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 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대한노인회, 전국노인평생교육, 단체연합회 등		-
	시민단체	사(재)단법인	· 경제, 노동, 인권, 환경, 교육, 소비자, 여성, 평화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 걸쳐 활동하고 있는 시민성함양단체 · NGO, YMCA, YWCA 환경운동연합 등		-
제11유형	기 타		· 기타 평생교육법 상이 아닌 타 법령상에 근거하여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부록 4 기본증명서 발급 방법

○ **(제출서류)** 평생교육사 자격 발급 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는 필수 제출 서류임.

- 기본증명서는 평생교육법 제24조 및 제28조의 평생교육사 자격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한 서류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개명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 '특정-개명·성본변경'으로 제출하여야 함.

○ **(발급방법)** 기본증명서는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음.

- (방문 발급)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발급이 가능하며, 증명서 발급 시 1통당 수수료가 발생됨.

 * 관할 처리기관은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에서 확인 가능

- (인터넷 발급)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통해 무료 발급이 가능함.



- 인터넷으로 기본증명서 발급 시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 발급하여야 함.

 · 개명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반' 유형의 서류가 아닌 '특정-개명·성본변경' 유형으로 선택·발급함.

 · 상세증명서로 개명사실 확인 가능하나 출생, 사망, 인지, 친권 등 모든 사항 함께 포함됨.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증명서발급
인터넷신고
민원안내
고객센터
통계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1. 발급 대상자를 선택해 주세요.
본인
가족
2. 증명서 종류를 선택해 주세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3.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선택해 주세요.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개명사실 확인 필요시, 특정·개명·성본변경
※상세증명서는 개명사실 포함 모든 사항 증명됨
4.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공개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전부 비공개
전부 공개
신청대상자 본인만 공개
5. 수령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6. 신청사유를 선택해 주세요.
개인 신분 또는 가족관계증명
국내 기관 제출
연말정산
해외 제출
본인 확인 등 기타

부록 5 외국학위 소지자 학력인정확인서 발급처(참고)

국가	발급기관	연락처 및 홈페이지	비고
미국	· DAPIP https://ope.ed.gov/dapip/#/home · CHEA https://www.chea.org/ * 상기 홈페이지에서 학교 인가 여부 확인 가능. 학교인가 사항이 홈페이지에서 확인될 경우 해당 내용 출력하여 제출 * 한미교육위원단 학교인가확인서 발급업무는 2020년 9월 30일부로 종료됨. 발급업무 종료 전 한미교육위원단에서 발급받은 학교인가 확인서 원본 서류가 있을 시 해당 서류로 제출 가능		
중국	· 서울공자아카데미	02-554-2688 / www.cis.or.kr	· 대학 졸업장 인증을 통하여 "학력인증보고" 서류 발급 ※ 기존 "학위인증보고"를 발급한 원본 서류가 있을 시 해당 서류로 접수 가능
	· 중국 교육부 학력인증센터 CHSI	www.chsi.com.cn	
일본	· 주한 일본대사관 영사부	02-739-7400	· 2년제 단기대학, 4년제 대학에 대하여 "학교장 직인 확인서(=인장증명서)" 발급 ※ 인장증명서가 아닌 학력인정에 대한 의견서는 인정 불가
뉴질랜드	· NZQA https://www.nzqa.govt.nz/providers/index.do * 상기 홈페이지에서 학교 인가 여부 확인 가능. 학교인가 사항이 홈페이지에서 확인될 경우 해당 내용 출력하여 제출 *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불가한 학교의 경우 주한뉴질랜드대사관에 문의		
베트남	· 주한 베트남대사관	02-739-2065, 02-734-7948	· 대학교 학력인정확인서
대만	· 주한국타이베이대표부	https://www.roc-taiwan.org/kr_ko/index.html	· "학교 인가 확인서" 발급 ·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식 다운받아 이메일로 신청 가능
영국	· 주한 영국문화원	02-3702-0601 https://www.britishcouncil.kr/	· "학력 확인서" 발급 ·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 (영국유학 - 영국학력 및 교육기관 확인서비스)
호주	· 주한 호주대사관 교육부	02-2003-0102	· "확인서" 발급

※ 학력인정확인서는 해당국 공공기관(교육부, 교육청, 대사관, 영사관 등)에서 발급한 서류여야하며, 해당국 정규학교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이 외 국가는 해당 국가 대사관(영사관 포함)에 직접 문의하여 증빙 필요